난민신청사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평등권[1)]

1. 사실관계

제1청구인과 그의 임신한 아내(제2청구인) 및 미성년자인 두 자녀(제3청구인, 제4청구인)는 2015년에 오스트리아에 입국하여 난민지위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모두 코소보 출신이며 난민지위 신청의 주된 이유로 제4청구인의 심각한 건강상태를 들고 있다. 제4청구인은 태어날 때부터 서혜부 탈골과 양발의 만곡, 안으로 굽는 경향이 있는 다리를 갖고 있으며 심장병을 앓고 있다. 코소보에서 의학적 치료는 불가능했다고 한다. 2016. 2. 23. 연방 외국인 및 난민청(Bundesamt für Fremden- und Asylsachen)의 질의에서 제2청구인은 다양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제4청구인이 서혜부 탈골과 관련된 수술을 이미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제4청구인의 '등에 있는 구멍'과 관련해서는 2016년 3월에 검진이 있으며, 다리의 변형과 관련해서는 우선 2016년 5월에 오른쪽 다리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제4청구인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은 없으나 양 다리에 부목을 댄 상태이다. 청구인 가족은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으며 체류허가가 있는 제1청구인의 형제의 집에서 살고 있으며 그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청구인의 난민지위 신청 절차의 관할국과 관련하여 유로닥[2)](EURODAC, European Dactyloscopy)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들의 첫 입국 국가는 슬로베

---

1) 2016년 11월 24일자 사건번호 E 1085-1088/2016-15.

2) 1990년 6월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더블린 컨벤션(Dublin Convention)'이란 명칭으로 체결되고, 1997년 9월 발효되었으며, 이후 2003년 2월 '더블린 조약 Ⅱ(Council Regulation (EC) No 343/2003)'로 개정되고, 2013년 7월 '더블린 조약 Ⅲ(Regulation (EU) No 604/2013)'으로 다시 한 번 개정된, 제3국(조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이나 무국적자가 조약 가입국에 국제보호 신청(난민 지위 신청)을 할 경우 그 심사를 책임질 국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체계를 규정한 더블린 조약의 내용에 따르면 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난민들은 처음 발을 디딘 유럽 국가에서 난민자격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유럽 국가로 이동하여 난민지위 신청을 할 경우 처음 입국한 국가로 이송된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것은 유럽공동체법에 따라 14세 이상의 난민 또는 월경자(border-crossers)의 지문을 등록하는 유로닥(EURODAC; European Dactyloscopy)이라는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유럽 각 나라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니아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구인 부부는 약 한달 가량 슬로베니아에서 체류하였으나 아픈 아이에게 충분한 치료가 제공되지 않아 그곳에서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연방 외국인 및 난민청은 슬로베니아에 난민자격심사 재심을 요청하였고 해당 국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청구인들의 양도를 승인하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연방 외국인 및 난민청은 청구인들의 난민지위 신청을 각하하고, 슬로베니아로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제4청구인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으나 의사의 소견서에 따르면 수술과 같은 미룰 수 없이 긴급한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출국과 관련된 기본권의 침해는 이유없다고 보았다.

이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연방행정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은 체류의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우려되지 않으므로 더블린 조약에 규정된 개입권[3](Selbsteintrittsrecht)은 이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4]와 관련해서는 제1청구인의 형제와 청구인들 사이에 특수한 경제적 또는 기타 의존관계가 부재하므로 고려할 만한 가족생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슬로베니아의 난민심사 절차에 심각한 흠결이 없으므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Refoulementverbot)과 관련해서도 문제없다고 보았다. 청구인들은 제4청구인이 의료조치를 위해 오스트리아에 왔을 뿐이므로 유럽인권협약 제3조[5]에 위배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제1청구인과 제3청구인은 건강하며, 제2청구인도 임신과 관련된 문제가 없으며 제4청구인은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서 그의 상태를

3) 더블린 조약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 난민지위 인정 절차의 관할국가가 아닐지라도 유럽연합 회원국이라면 난민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더블린 조약이 이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개입권이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지는 주로 각 회원국의 내국 법률 및 재량에 달려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자국 난민법 2005에 따라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조문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입권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4) [유럽인권협약 제8조]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5) [유럽인권협약 제3조] (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생명에 긴급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난민인정 절차의 관할국인 슬로베니아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제4청구인을 슬로바키아(연방행정법원은 이를 슬로베니아의 오기로 추정하였다.)로 이송하는 방법도 항로 또는 육로로 문제없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청구인들은 이 결정에 대해 외국인의 평등권 침해 등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심판대상 판결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는 외국인의 평등권(연방헌법 BGBl. Nr. 390/1973 제1조 제1항)을 침해당했다.

해당 판결을 파기한다.

3. 이유

(1)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6]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청산을 위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한 연방헌법'(Bundesverfassungsgesetz zur Durchführung des Internationalen Übereinkommens über die Beseitigung aller Formen rassischer Diskriminierung, BGBl. 390/1973) 제1조 제1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외국인 간에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헌법조문은 외국인에 대한 평등대우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차별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차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6) VfSlg. 13.836/1994; VfSlg. 14.650/1996; VfSlg. 16.080/2001, 17.026/2003.

이 조문에 의해 보장되는 주관적 권리는 그 내용에 위배되는 법률에 기반한 결정과 충돌하며,[7] 행정법원이 일반법을 잘못 적용하여 그 내용이 위의 연방헌법에 반하는 경우[8], 또 행정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였을 경우[9]에도 상기 권리와 충돌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법원의 자의적인 결정은 무엇보다도 법적 상황판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와 핵심적인 문제 조사에 있어서의 부작위 또는 적법한 조사절차 자체에 있어서의 부작위, 특히 당사자진술을 무시하거나 기록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경시하여 왜곡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예: VfSlg. 15.451/1999, 15.743/2000, 16.354/2001, 16.383/2001)

(2) 연방행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였다.

1) 연방행정법원은 제4청구인에게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그가 안짱다리이며 원인미상의 척추뼈 갈림증과 꼬리뼈 퇴행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미 시행된 서혜부 탈골과 관련된 수술 외에도 또 다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입원 중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유럽인권협약 제3조의 침해가 우려되는 건강에 긴급한 위협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행정법원은 제4청구인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지 않고, 슬로베니아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슬로베니아로의 인도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 연방행정법원은 증거판단과 제4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 판단에 대해 충분히 검토(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해서는 2013. 9.

7) 일례로 VfSlg. 16.214/2001.
8) VfSlg. 14.393/1995, 16.314/2001 참조.
9) 일례로 VfSlg. 15.451/1999, 16.297/2001, 16.354/2001, 18.614/2008.

16.자 VfGH U 496/2013 참조)하지 않았다. 또한 예정된 수술이 슬로베니아에서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 및 이러한 수술을 받지 못할 경우 제4청구인의 건강상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하지 않았다.[10] 제4청구인의 이송가능성에 대해서도 '슬로바키아'로의 이송가능성과 관련된 연방 외국인 및 난민청이 의사에게 문의한 형식적이고 짧은 소견서를 바탕으로 파악하였다. 목적지 국가에 제4청구인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되지 않았다. 만약 그러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이와 관련해서 제4청구인에게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서 도출되는 권리의 침해[11]가 예상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되지 않았다.

3) 연방행정법원은 당사자 진술과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여 제4청구인의 상태에 관한 중요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 흠결은 다른 청구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므로[12] 모든 청구인들에 대하여 연방행정법원의 결정을 파기하여야 한다.

10) 예정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4. 9. 19.자 VfGH U 634/2013 등 참조; 질병치료 가능성과 관련된 조사 의무에 관해서는 2014. 3. 5.자 VfGH U 95/2013; 2016. 6. 30.자 E 381-382/2016 참조.
11) 관련 심사기준은 VfSlg. 18.407/2008, 19.086/2010 참조.
12) 난민법 2005 제34조 제4항, BGBl. I 100/2005; VfSlg. 19.855/2014 참조.